제176회 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13년 주요업무 보고



위 생 과

보 고 순 서

I. 일 반 현 황

Ⅱ , 주요업무 추진실적

•••• 4

Ⅲ. 신규·주요 투자사업 실적 •••• 27

Ⅰ.일 반 현 황

1 인 력

구	분	계	일 반 직							J	비능 격	딕		
	- 군 게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정	원	23	_	1	5	5	5	5	_	_	1	1	-	
현	원	23	_	1	7	6	2	2	-	2	3	1	1	
과투	부족	_	_	_	2	1	△3	△3	_	2	2	△1	_	

2 조 직

위 생 과

식품위생팀 위생개선팀 식품안전팀 공중위생팀 원산지관리팀 • 식품위생업소 • 식품위생업소 • 식품제조·판매업 • 공중위생업소 • 원산지표시제 신고・허가 신고・허가 신고 및 관리 등록,신고 및 관리 지도·단속 처리 및 관리 처리 및 관리 • 부정·불량식품 • 공중위생업소 • 원산지표시제 • 식품위생업소 • 식품위생업소 홍보 및 교육 지도단속 자율점검 지도단속 지도단속 • 어린이식품안전 • 수질검사 및 • 식육 수거검사 • 집단급식소관리 • 모범음식점 관리 위생점검 육성 관리 • 과징금·과태료 • 건강기능식품 • 공중위생업소 관리 · 식중독 예방관리 판매업신고 및 서비스평가 관리 • 위생교육 관리 • 음식문화개선 • 공중이용시설 공기질 측정 • 수입식품판매업 • 식품진흥기금운용 영업신고 및 관리 지도점검 • 무허가업소 관리

3 주요시설 및 장비

구 분	명 칭	현 황	비고	
	차 량	마티즈(2005년식)	2005.1월 구입	
	갤럭시탭	13대	2011.10월 식품의약안전청 지원	
이제되고	식품 등 유해물질 측정기	3대	2012.5월 인센티브사업비 지출	
위생점검	손씻기 뷰박스	20대	식중독예방 손씻기 장비	
(9종60대)	ATP측정기	4대	식품 위생점검 장비	
	적외선·디지털 온도계	14대		
	미생물 배양기	1대		
	차량용 냉장고	2대		
	실내공기질 측정기	1대	미세먼지 측정	

4 예 산 현 황

□ 사 업 별

(단위 : 천원)

	단위사업명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율(%)
총계		1,678,924	1,234,050	74
	소 계	198,302	93,872	47.34
구 비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강화	61,876	26,670	43.10
	기본경비	136,426	67,202	49.26
	소 계	1,480,622	1,140,178	77
기	식품진흥운영 기금	538,567	198,123	37
급	예 치 금	938,443	938,443	100
	반 환 금	3,612	3,612	100

목 차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1. 식품진흥기금 운용 활성화	· 4
2. 모범음식점 운영 ● 관리 강화	··· 6
3. 식중독 예방활동	. 8
4.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강화	10
5. 식품접객업소 자율점검을 통한 위생 사각지대 해소 …	12
6. 식품안전관리 체계 강화	14
7.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16
8. 음식점원산지 표시제 활성화	18
9. 공중위생업소 자율점검	21
10. 수질검사 및 위생점검	23
11. 공중위생업소 서비스평가	25
12. 공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	26
〈신규·주요투자사업〉	
1. 주택가 유해업소 특별위생점검	27
2. 먹는 물 개선사업	28

Ⅱ. 주요업무 추진실적

1 ┃ 식품진흥기금 운용 활성화

음식문화개선 사업지원 및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일반음식점 시설개선자금 지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활동 지원,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지원 등 식품진흥기금을 내실 있게 운용하고자 함

□ 사업목표

- 고유목적사업 지원(비융자성사업) : 6개 사업238,567천원
- 융자 지원(융자성사업) : 6개소 300,000천원

□ 사업내용

- 고유목적사업 지원(비융자성사업): 식중독 예방관리 외 6개 사업
- 식품접객업소 융자지원(융자성사업): 시설개선자금, 육성자금(모범음식점)

□ 추진실적

○ 고유목적사업 지원실적(비융자성사업) (단위: 천원)

내 용	목 표	실 적	진도(%)	비고
고유목적사업 지원	238,567	55,123	23%	
- 식중독 예방관리	24,705	7,420	30	구비
- 식품안전 및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2,840	780	37.5	구비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116,122	43,595	37.5	구비
- 음식문화개선 홍보 등	30,760	0	0	구비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4,140	1,328	32.1	시보조금(100%)
- 식생활 정보센터(보건지원과)	40,000	2,000	5	시보조금(50%)
- 나트륨섭취감소사업(보건지원과)	20,000	0	0	시보조금(50%)

○ 융자 실적(융자성사업)

내 용	목 표	실 적	진도(%)
식품접객업소 융자지원	300,000(6개소)	143,000(3개소)	48
- 시설개선자금	200,000(4개소)	93,000(2개소)	46.5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100,000(2개소)	50,000(1개소)	50

(단위: 천원)

□ 향후 추진계획

- 식품접객업소 융자금 지원 홍보
 -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시 홍보 및 안내문 배부(9월)
 - 행복소식지 및 보건소식지 분기별 홍보, 구 · 부서 홈페이지 홍보
 - 민원실 창구 연계 상담(수시)

□ 기대효과

- 영세 식품위생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 청결한 구 이미지 제고 및 경기 활성화 효과 증대
- 식품진흥기금 지원 사업으로 인한 식품안전 확보 및 구민영양 개선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538,567천원	198,123천원	37

2 ┃ 모범음식점 육성 · 관리 강화

음식문화 질적 향상을 위하여 모범업소를 관리·육성하고 우수한 모범업소를 신규 지정하여 관내 음식점 이용 시민들에게 향상된 위생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선진 음식문화 정착에 기여코자 함.

□ 사업목표

- 모범음식점 지정·운영 : 신규(2회) 및 재지정(수시, 정기)
- 모범음식점 지원 : 모범업소 육성자금 지원 2개소
- 모범음식점 이용 홍보 강화 : 년6회 이상

□ 사업내용

- O 모범음식점 지정·운영
 - 모범음식점 지정현황

	업 태 별							,	면 적	별(m²))	
계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뷔페	기타	계	80미만	80~99	100~199	200~299	300이상
218	138	21	35	11	6	7	218	16	22	89	32	59

- 모범음식점 관리 (목표 200개소, 일반음식점 총수의 5%이내)
 - · 신규지정 : 연2회 (6월, 11월)
 - ·재 지 정 : 정기: 매년10월 / 수시: 업소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 ·지정취소 : 지정기준 미달, 영업정지이상, 폐업 등
- ※ 모범음식점의 양적 증가보다는 질적 향상에 주력하여 이용 고객의 만족도 제고
-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 ·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주요 점검내용(평가기준: 22개항목 85점이상)
 - · 좋은 식단 이행여부 주요 점검내용(평가기준: 공통사항10개항목, 업태별2~3개항목)

O 모범음식점 지원

- 모범업소 육성자금 융자 지원 : 업소당 50백만원 이내
-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 지원 : 업소당 88천원(신규, 분실·훼손 등)

O 모범음식점 이용 홍보 강화

- 전국시군구 모범음식점 이용 홍보 : 연6회 이상
- 구소식지, 지역신문 및 지역방송 등에 보도자료 제공 및 홈페이지 게재

□ 추진실적

내 용		목 표	실 적	진도율(%)	
	신규 연2회(6월,11월)		6월(추진중)	_	
모범음식점 지정·운영	-11 -1 7J	정기(매년10월)	_	_	
	재지정	수시(6회)	3회	50	
	모범업소 -	육성자금 융자 지원	1개소	50	
마바이지과 기이	(2개소 10)0,000천원)	(50,000천원)	30	
모범음식점 지원	모범업소 3 (218개소)	표지판 제작 지원	218	100	
모범음식점 이용 홍보	전국시군구, 구 소식지,		3회	FO	
—————————————————————————————————————	구 홈페이지] 등 이용 홍보(6회)) अ	50	

□ 향후 추진계획

- 모범음식점 신규 신청업소 심사 추진(6월, 11월)
- 모범음식점 변동사항이 있는 업소는 수시 재지정 심사 추진(연중)
- 기존 모범음식점에 대해 정기 재지정 심사 추진(10월)
- 서울시 위생등급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음식점 책자 제작(12월)

□ 기대효과

○ 모범업소 신규 지정 및 재지정 심사 강화로 모범업소 위생관리 수준 향상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1,760천원	_	_
위생등급 우수 음식점 책자 제작 20,000천원	_	_

3 ┃ 식중독 예방활동

지구 온난화 현상 등 급격한 환경변화로 식품이 위해 물질에 오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학교 등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에 대한 관리 강화로 식품안전 정착

□ 사업목표

- 집중관리시설 위생점검 : 321개소
- 식중독지수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실시 : 90회
- ○『1830 손씻기 체험관』운영: 102개소
- 식중독 예방 홍보 다양화

□ 사업내용

- 집중관리시설 위생점검
- 기 간 : 집단급식소 (10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10월)
- 대 상: 321개소

(단위 : 개소)

		집단급식소					
합 계	소 계	학 교	유치원	어린이집	시회복자시설	기타 (산업체 똥	식품판매업소 (식자재납품업소
321	260	43	25	54	8	130	61

- 점 검 반 : 민·관 합동점검 실시(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용)
- 점검내용 : 간이 키트장비 활용 종사자 손, 칼, 도마, 행주 등 검사, 식자재관리
- O 식중독지수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실시
 - 기 간 : 2013. 5. 1 ~ 9. 30 (5개월간)
 - 대 상 : 일반음식점, 공무원 등 1.241명
 - 발송기준 : 식중독지수가 10~34인 관심단계 이상
 - 내 용
 - · 예시 : "식중독지수00[위험]음식물0~0시간내 부패우려, 식중독예방에 특별주의"
- O『1830 손씻기 체험관』운영
 - 기 간 : 연 중
 - 대 상
 - · 상설 체험관 : 2개소(보건소 2층, 글로벌다문화센터)
 - · 이동 체험관 : 100개소(학교, 병원, 어린이집, 복지시설 등 이동체험관)

O 식중독 예방 홍보 다양화

- 기 간 : 연중

- 방 법

• 구민대상 홍보 및 체험실시 : 영등포아카데미 등 구민 교육 및 행사시 병행

• 캠페인 실시 : 연 2회(식품접객업 영업주, 음식업협회, 관련 공무원 등 200명)

· 대중매체 홍보: 디지털 홍보관, 구·보건소식지 및 홈페이지, 지역언론, 지역방송 등

□ 추진실적

(2013. 5.31현재)

내 용	목 표	실 적	진도(%)
집중관리시설 위생점검	2회(321개소)	1회(278개소)	88
식중독지수 문자서비스(SMS)	90회	22회	24
1830 손씻기 체험관 운영	100개소	79개소	79
식중독예방교육 및 홍보	10회	11회	110
- 식중독예방교육	1회	1회	100
- 홍보물 제작	3회	3회	100
- 보도자료, 소식지 등 홍보	6회	7회	117

□ 향후 추진계획

○ 식중독지수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실시

- 실시기간 : 하절기 집중홍보(5. 1 ~ 9. 30) - 대 상 : 일반음식점, 공무원 등 1.241명

□ 기대효과

○ 식중독예방 홍보 및 교육 강화로 식중독 발생 제로화

○ 식중독지수 등 정보제공으로 식중독 발생의 경각심 고취

○ 식품취급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식중독 발생가능성 사전차단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27,105천원	7,420천원	27

4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강화

식품접객업소 준수사항 위반으로 각종 주민 불편사항이 증가되어 소비자감시원과 합동 지도점검을 계절·테마별로 특성화하여 실시함으로써 올바른 위생질서 확립과 음식문화개선을 통해 구민의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코자 함

□ 사업목표

○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 120회

□ 사업내용

O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 대상업소(식품접객업) 현황

(단위: 개소)

총 계	일 반 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휴 게 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영 업
8,095	6,180	202	292	1,178	135	105

- 테마별 자체특별 기획점검 : 12회(2.305개소)
- ※ 장례식장 연계 음식점, 대형마트 내 음식점, 야식배달전문 음식점, 생맥주취급 음식점 등
- 청소년 유해업소 야간점검(민·관합동점검): 96회(2,000개소)
- 서울시 자치구 교차 민·관 합동 점검 : 12회 참여

□ 추진실적

내 용	목 표	실 적	진도(%)
○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 테마별 자체특별 기획점검	12회(1,790 개소)	6회(1,066 개쇼	60
- 청소년 유해업소 야간단속	96회(2,000개소)	41회(939개소)	43
- 서울시 교차 민관합동 단속참여	12회	5회	42

□ 향후추진 계획

○ 서울시 자치구 교차 민·관 합동 단속 참여

- 참여기간 : 월 1회(홀수 달 야간, 짝수 달 주간)

- 대상업소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 점검반 운영 : 서울시 전체 4인 1조 25개반

(공무원 50, 서울시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0)

- 점검내용 :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생관리기준 적합여부 등

□ 기대효과

- 지속적인 단속을 통한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행위 근절
- 퇴·변태업소 점검을 통한 청소년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여 구민 건강 증진에 기여
- 사전점검을 통한 식중독 발생 예방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율(%)
24,336천원 (구비 16,656 /구기금 7,680)	11,460천원 (구비 8,100 /구기금 3,360)	47

5 ┃ 식품접객업소 자율점검을 통한 위생 사각지대 해소

식품접객업소 처분 위주의 점검 대신 위생지도서비스 및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단속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영업자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 함으로써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위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 사업목표

- 식품접객업소『위생지도서비스』운영: 1.350개소
- 인터넷 자율점검시스템 운영: 2.440개소

□ 사업내용

○ 식품접객업소『위생지도서비스』운영

- 기 간: 2013. 3 ~ 11월

- 대 상: 1,350개소

※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이 $150m^2$ 미만인 업소 및 2012년 미지도 업소 (소주방, 호프, 카페 등 주류 판매업소 제외)

○ 인터넷 자율점검시스템 운영

【서울시 인터넷 자율점검】

- 기 간 : 2013. 1월 ~ 12월(연 4회)

- 대 상 : 9,760개소

□ 추진실적

내 용	목 표	실 적	진도(%)
위생지도서비스 운영	1,350개소	450개소	33
인터넷 자율점검	9,760개소	2,894개소	30

□ 향후 추진계획

O 식품접객업소 『위생지도서비스』 운영

- 기 간 : 2013. 6 ~ 11월

- 대 상 : 900개소

O 인터넷 자율점검시스템 운영

【서울시 인터넷 자율점검】

- 기 간 : 2013. 7월 ~ 12월(연 4회)

- 대 상 : 2,440개소 (단위:개소)

계	일반음식점 (100 m²이상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제조가공 (100 m²이상	기타식품	집단급식
2,440	696	1,178	135	105	23	29	274

□ 기대효과

○ 식품접객업소 처분 위주의 점검 대신 자율적인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자율점검 참여분위기 조성을 통한 수요자 만족도 체감도 상승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율(%)
4,000천원	2,160천원	54

6 ┃ 식품안전관리 체계 강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급격한 환경변화와 식품의 생산과 유통의 다양화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2013년 식품안전 관리지침에 의거 『Clean-Safe Food』제공하여 구민건강을 보호코자 함.

□ 사업목표

○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 : 113개소

○ 식품판매업소 자율점검 : 2.654개소

○ 유통식품 수거검사 : 600건

□ 사업내용

○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 112개소(명절,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등)

- 점검내용 : 무허가 원료 사용, 유통기한 변조, 종사자 위생관리 상태 등

○ 식품판매업소 자율점검 2,654건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식품수입판매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등

○ 유통식품 수거검사 390건

- 수거 품목 : 계절별 성수식품, 수입식품, 조리식품, 어린이기호식품 등

□ 추진실적

내 용	목 표	실 적	진도(%)
식품제조·판매업소 점검	112건	113건	101
식품판매업소 자율점검	2,654건	1,391	52
유통식품 수거검사	600건	390건	65

□ 향후 추진계획

- 유통식품 수거검사
 - 여름철 식품안전관리대책 특별 추진
 - · 하절기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특별점검 40개소 (빙과류, 냉면 육수, 면류 등 하절기 성수식품 수거검사)

- 식품제조·판매업소 점검
 - ·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지도점검 30개소 (김장찰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지도점검)
- 식품판매업소 자율점검 2,654개소
 - · 건강기능식품판매, 수입식품판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단계별 자율점검 실시 후 미 참여 업소 현장점검)
- ※ 하반기 식품판매업소 자율점검 실시로 소비자감시원 집중 투입

□ 기대효과

- 식품제조·판매업소 관리강화로 구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 식품 수거검사 강화로 부적합식품 유통 사전 차단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율(%)
20,560천원	8,100천원	39

7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어린이 기호식품의 유통·소비환경 개선을 통하여 어린이 건강보호와 어린이 및 부모의 식품선택 역량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균형 잡힌 어린이 식생활을 보장하기 위함.

□ 사업목표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내실화 : 학교주변 43개소

○ 어린이 식품안전동아리 운영 : 1개교

□ 사업내용

O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내실화

- 대 상 : 초·중·고교 주변 43개소

- 업 소 수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13개소

- 방 법 : 월 1회(학기 중) 이상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및 공무원이 대상업소 방문하여 지도 점검

· 1 차 :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가 대상업소 방문하여 점검 및 계도

· 2 차 : 공무원이 위반사항 있는 업소 재확인 후 적발 시 행정처분

- 점검내용 : 고열량·저영양식품, 정서저해식품 등 판매행위

○ 어린이 식품안전동아리 운영

- 대 상 : 관내 학교 중 1개교 선정

- 기 간 : 7개월

- 운영방법 : 영양교사 지도로 방과 후 학습 및 특별활동과 연계하여

토론, 체험, 견학 등 자체 프로그램 운영

- 지 원 : 운영비 월20만원씩 지원(시비)

□ 추진실적

내 용	목 표	실 적	진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내실화	10회	4회	40
어린이 식품안전동아리 운영	1개교/7개월	1개교/2개월	64

※ 처분내역: 행정처분 3(과태료 3), 계도 38개소

합 계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종사자 위생모 미착용	식품보관 미흡 등
41개소	2개소	1개소	38개소

□ 향후 추진계획

-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지속 점검 : 월 1회 이상
- 어린이 식품안전동아리 운영 : 운영비 지원(월20만원, 5개월)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 3개소
 - 위생설비를 갖추고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 선정
 - 우수판매업소 표지판 제작 교부

□ 기대효과

○ 부정·불량식품 근절로 어린이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율(%)
46,920천원	21,360천원	46

지속적인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지도점검으로 공정한 유통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 시행 및 표시 방법 개선에 따른 취약업소 홍보·교육 활성화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의 완전 정착을 유도하고자 함

□ 사업목표

○ 원산지 표시제 지도점검 : 3.260개소

구분	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전체업소	7,549	6,157	1,132	260
점검대상	3,260	2,670	330	260

- ※ 전년도 미점검업소 및 행정지도업소, 식육 취급업소, 수산물 취급업소 등 (호프, 소주방 등 야간점검대상업소, 다방, 찻집 등 다류전문업소 제외)
 - 쇠고기 유전자 수거검사 : 45건
 - 원산지 표시제 홍보 및 교육 : 연40회

□ 사업내용

O 음식점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 기 간 : 연중

- 대 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 점 검 반 : 2인1조 3개반 (공무원2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4명)

- 점검방법 : 시기별 기획점검 및 방문지도서비스

• 기획점검 : 식육, 수산물 등 원산지 표시대상 전문취급업소

• 방문지도서비스 : 소규모, 영세업소

방문지도 (1차)	자율시정	시정여부 확인 (2차)	미시정업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영업주	공무원	행정처분

- 점검내용
 - · 원산지·식육의 종류 표시 여부 및 표시방법 적합 여부

-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표시 여부
- 축산물 원산지 증명서류 보관 여부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개정사항 이행 여부 집중점검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개정·시행

- 근거법령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제10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시 행 일 : 2013. 6. 28

- 주요내용

•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추가 및 확대

기 존 (12종)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배추), 조피볼락(우럭), 넙치(광어),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추가품목 (4종)

양고기(염소 등 포함), 고등어, 갈치, 명태 (황태, 북어 등 건조품 제외)

확대품목 (3종)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배달용 돼지고기, 수족관 내 살아있는 수산물

• 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 변경

구 분
글자크기
표시장소
표시위치
배추김치
혼합표시
보관식재료

기 존
음식명 1/2 이상
영업장 면적 $100m^2$ 이상은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하며, 영업장 면적 $100m^2$ 미만은 메뉴판 또는 게시판 중 선택하여 표시 가능
규정없음
배추만 표시
규정없음
축산물만 보관장소에 표시

개 정 음식명과 가격크기와 동일 또는 크게 표시 영업장 면적과 상관없이 메뉴판과 게시판에 표시하며, 메뉴판과 게시판 중 한 가지만 사용할 경우에는 그 곳에

중 한 가지만 사용할 경우에는 그 곳에 표시함 단, 원산지 표시판을 제작하여 사용하는 경우 메뉴판 및 게시판의 표시 생략 가능 (규격21 cm×29 cm 이상, 글자크기 30포인트 이상)

30도인드 이상) 음식명과 가격 바로 옆 또는 밑에 표시

섞음비율이 높은 순으로 표시

배추와 고춧가루 함께 표시

보관중인 농수축산물의 제품포장재나 냉장고앞면, 식재료창고,수족관 등에 원산지 표시

O 쇠고기 수거·유전자 검사

- 기 간 : 월 2회 이상

- 대 상 : 국내산 한우 취급업소 또는 정육식당

- 수거방법 : 한우취급업소별 검체 유상수거 후 한우유전자검사
- 검사결과 조치 : 비한우 판정 시 원산지 거짓표시로 고발

O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홍보 및 교육

- 기 간 : 수시

- 대 상 : 구민, 식품접객업소 영업주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 내 용

- · 홍보리플릿 및 홍보물품 제작·배부, 안내문 발송
- 홍보캠페인 및 홍보관 운영
- · 구 소식지 · 홈페이지 · 지역신문 · IP-TV 등에 홍보
- 영업주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대상 집합교육 등

□ 추진실적

(5.31 현재)

내 용	목표	실적	진도(%)	비고
음식점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3,260개소	1,422개소	44	2,3분기 집중점검
쇠고기 수거 및 유전자 검사	45건	35건	78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홍보 및 교육	40회	29회	73	

※ 행정처분 : 과태료9(미표시5.증명서류 미보관3.표시방법위반1).고발2(거짓표시2)

□ 향후 추진계획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지도점검 : 7~12월
- 쇠고기 수거 및 유전자 검사 : 7~10월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개정사항 집중 홍보 : 7~8월

□ 기대효과

- 점검 전 방문지도서비스 제공으로 영업주 시정의지 고취 및 부담감 완화
- 분야별 시기별 기획점검으로 원산지 관리 사각지대 최소화
- 다양한 홍보 및 교육활동으로 달라지는 원산지 표시제도의 조기정착에 기여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율(%)
29,250천원 (구비6,850,구기금22,400)	14,850천원 (구비4,850,구기금10,000)	51

9 ▮ 공중위생업소 자율점검

공중위생서비스의 품질경쟁력 향상과 행정력을 최소화시키고 영업주가 책임감과 준법성을 갖고 자율적인 위생 점검을 생활화하도록 하며, 투명성 과 신뢰성을 높여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 사업목표

○ 공중위생업소 자율점검 : 1,682개소

□ 사업내용

O 공중위생업소 자율점검

- 대 상 : 1,682개소(업종별 월별 점검) (단위 : 개소)

내 용	계	숙박업	미용업	이용업	세탁업	위생관리 용역업	비고
업소수	1,682	263	750	185	235	249	

- 점검반 운영: 1개반 3명(공무원 1. 명예공중위생감시원 2)

- 점검방법 및 조치

• 1단계 : 자율점검표에 의한 영업주 자율점검 실시

• 2단계 : 미 이행업소에 대하여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합동점검 실시

• 3단계 :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 추진실적 (단위 : 개소)

내 용	목 표	실 적	진도(%)	비고
숙박업 자율점검	263	263	100	휴업3개소, 페업1개소
미용업 자율점검	750	875	116	- 옥외가격표시제 대상 3월 완료 - 4.18~6.21 750개소 자율점검 진행중
이용업 자율점검	185	0	0	8월 예정
세탁업 자율점검	235	0	0	7월 예정
위생관리용역업 자율점검	249	0	0	9월 예정

-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미용업 옥외가격표시제 시행(2013.1.31)
 - 영업소 면적 $66m^{\circ}$ 이상 이 \cdot 미용업 130개소 자율점검 및 현장점검 실시

□ 향후 추진계획

○ 대 상 : 1,682개소(업종별 월별 점검)

내 용	계	숙박업	미용업	이용업	세탁업	위생관리 용역업	비고
업 소 수	1,682	263	750	185	235	249	
점검시기		완료	완료	8월	7월	8월	

(단위 : 개소)

□ 기대효과

- 공중위생서비스의 품질경쟁력 향상
- 영업주의 책임감과 준법성 고취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율(%)
1,280천원	640천원	50

10 ┃ 수질검사 및 위생점검

신체에 직접 접촉되는 목욕장업 욕조수의 수질검사 및 위생처리업 등 제품의 검사를 통해 부적합 위생용품의 유통방지 및 위해요인 사전 차단으로 시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 사업목표

○ 목욕장업 수질검사 : 56개소 112회

○ 공중위생업소 위생점검 : 638개소

□ 사업내용

O 목욕장업 수질검사

- 대상 및 기간 : 목욕장업 56개소 (5월, 10월)

- 점검반 운영 : 1개반 3명(공무원 1. 명예공중위생감시원 2)

- 점검방법: 욕조수·샤워기물·먹는물 채수하여 보건소 의약과에 의뢰

- 점검 조치: 『먹는물 관리법』, 욕조수 수질기준에 부적합 시 행정처분

○ 공중위생업소 위생점검

- 공중위생업소 ATP 검사 : 이 · 미용업소 미용도구 및 숙박업소 침구류 등을 ATP로 측정하여 기준치 초과시 영업주에게 위생수준 향상시키도록 계도 및 홍보
- 미용업소 업종 간 변경 신고시 시설조사
 -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개정(2012.12.11)으로 미용업 시설기준 변경에 따른 업종 간 변경신고 추진: 미용업 약 480개소(변경신고 시 15일 내 시설조사)

· 시설조사 현황

(2012.12.31.기준)

구분	업종	업소수	업종변경신고 및 시설조사 대상	비고
2008년 이전	미용업	409	약 380개소	
2008년 이후	미용업(일반)	115		
	미용업(피부)	82		
업종 세분화	미용업(종합)	147	약 100개소	
	계	753	약 480개소	

- 위생처리업 수거검사(연 2회 7월, 11월) : 물수건 외 3종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여 부적합시 행정처분

- 공중위생업소 수시점검: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보고 및 출입·검사)에 의거하여 시설기준 및 위생수준 수시점검

□ 추진실적 (단위: 개소)

구분	내 용	목 표	실 적	진도(%)	비고
수질검사	목욕장업 수질점검	112(연2회	63	50	5.08 ~ 5.22 실시
	공중위생업소 ATP 검사	50	20	40	
위생점검	미용업소 업종 간 변경신고 시 시설조사	480	100	20	미용업 시설기준 변경에 따른 업종 간 변경신고 추진
71007	위생처리업 수거검사	8(연 2회)	0	0	위생처리업 위생관리기준 고시 일부 개정으로 서울시 계획 미시달(7월중 예정)
	공중위생업소 수시점검	100	63	63	

※ 점검결과 조치: 개선명령 11개소, 경고 3개소, 과태료 39개소, 영업정지 1개소, 과징금 1개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7개소

□ 향후 추진계획

- 목욕장업 수질검사(하반기, 10월) : 목욕장업 56개소(욕조수, 샤워기물)
- 공중위생업소 위생점검
 - 공중위생업소 ATP 검사 : 이·미용업소 및 숙박업소 30개소 검사
 - 미용업소 업종 간 변경신고시 시설조사: 하반기 380개소 완료
 - 위생처리업 수거검사(연 2회 7월, 11월): 4개소
 - 공중위생업소 수시 점검으로 위생수준 향상: 40개소

□ 기대효과

- 신체에 직접 접촉되는 욕조수 수질검사를 통해 위해요인 사전차단
- 실질적인 수치로 보여주는 ATP검사로 영업주의 위생에 대한 의식 제고
-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른 미용업 업종 변경 안내 및 홍보로 영업주의 불이익 예방
- 부적합 위생용품의 유통방지 및 위해요인 사전차단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율(%)
600천원	440천원	73

11 ▮ 공중위생업소 서비스평가

공중위생 업소에 대한 이용자의 업소 선택권 확대와 영업자의 자발적 위생수준 향상 유도를 위해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분석을 통해 이용객의 요구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사업목표

○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및 서비스 평가 : 935개소

□ 사업내용

-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및 서비스 평가
 - 평가대상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공중위생 6개업종 전 업소
 - · 2013년 평가대상: 총 2개 업종 935개소(미용업 758, 이용업 171)
 - 업종별 격년제 평가(보건복지부에서 대상 업소 선정)
 - · 평가반 운영 : 3개반 7명(공무원 1, 명예공중위생감시원 6명)
 - · 평가방법 : 평가반이 업소 방문 후 평가표 작성
 - · 평가결과 : 평가 등급 공표(홈페이지, 언론 등) 및 우수 업소 게시판수여
 - · 평가내용 : 업종별 현황, 법적 준수사항, 권장사항 등 27개 항목

□ 추진실적

- 2013년 7~9월 추진
- 2012년 대상 업소 : 세탁업·숙박업·위생관리용역업·목욕장업
 - 무단폐업 업소 제외한 대상 전업소 실시 및 최우수 업소 5개소 로고(게시판 수여)

□ 향후 추진계획

- 이·미용업소 서비스평가
 - 이용업 171개소: 8~9월
 - 미용업 758개소: 7~9월

□ 기대효과

○ 적발위주의 관리에서 사전 지원적 위생관리를 통해 행정의 신뢰도 제고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율(%)
9.360천원	_	О

12

공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여 위생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실내 공기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이용자 중심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사업목표

○ 공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

□ 사업내용

O 공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

- 대 상 : 공중이용시설 총 644개소 중 100개소

- 기 간 : 5월~12월

- 점검내용 : 4개 항목(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 점검방법 : 미세먼지 측정기, 간이측정기(CO, CO2, 포름알데히드)로 2개

지점 각 20분씩 측정

□ 추진실적

(단위 : 개소)

내 용	목 표	실 적	진 도(%)	비고
총 계	100	20	20%	
업 무시 설	32	8	20/0	최근 5년간 부적합 시설 및
복합건축물	56	5	9%	미측정 시설 우선, 1,000㎡ 이상 업소 우선 측정
공 연 장	1	0	0%	
혼인예식장	7	1	12.5%	
소규모 공연장 및 체력단련장	4	6	150%	

※ 기준초과시설 5개 업소에 대해 행정지도

□ 향후 추진계획

○ 공연장·혼인예식장 6개소 (7~8월), 업무시설·복합건축물 75개소 (8~12월)

□ 기대효과

○ 이용자 중심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율(%)
980천원	120천원	12.2

Ⅲ. 신규·주요 투자사업 실적

▍주택가 유해업소 특별위생점검

주택가 유해업소 밀집지역의 청소년 유해행위, 퇴·변태 영업 등 불법 행위 집중 단속으로 청소년 보호와 주민불편 해소 및 식품접객업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

□ 사업목표

○ 까페형 밀집지역의 집중단속(60개소)

□ 사업내용

- 까폐형 일반음식점 분기별 집중점검 (년4회/60개소)
 - 대 상 : 60개소(당산동 소재)
 - 점검내용 : 청소년 유해행위(출입 고용 주류제공) 위생라리기준 적합여부 등
 - 위반업소 : 3개소(시정명령 1건, 과태료 2건)
- ※ 영등포경찰서 개최(13.3.18). 영등포구 지역치안협의회 안건제출
- ※ 2010년 및 2013년 서울시에 식품위생법 개정건의
 - 건의내용 : 까페 영업인 경우 별도의 시설기준 마련
 - ☞ 외부에서 내부 영업소가 보이도록 벽면 투명재질 설치 및 업소 내부 조명(조도)의 밝기 유지되도록 조명설치

□ 추진실적

내 용	목 표	실 적	진 도(%)
까페형 일반음식점 점검	4회	1회	25%

□ 향후 추진계획

- 매분기 영등포경찰서와 합동 점검
- 중점점검 : 청소년 출입·고용 등 청소년 유해행위 퇴 · 변태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유무 확인

□ 기대효과

- 퇴·변태 영업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청소년 보호 및 자진퇴출 유도
- □ 소요예산 : 비예산

2 ┃ 먹는 물 개선사업

공중위생업소에서 제공하는 먹는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강화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상위해를 방지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으로 개선하고자 함.

□ 사업목표

○ 숙박업소·목욕장업 먹는물 검사(318업소)

□ 사업내용

O 숙박업소·목욕장업 먹는물 검사(318업소)

- 사업대상 : 숙박업 · 목욕장업 전 업소(숙박업 262, 목욕장업 56)

- 기 간: 2013. 3 ~ 11월(9개월간)

- 점 검 반 : 2인 1조(공무원1, 명예공중위생감시원1)

- 수질검사 내역

검사대	}}	검사기준	검체항목	검사항목
냉온수>	7]	먹는물 수질기준	냉수	일반세균,총대장균군,대장균, 분원성 대장균군, 탁도

· 검사방법 : 먹는물 채수하여 보건소 검사실에 검사의뢰

· 검사주기 : 연1회

□ 추진실적

업 종	업소수	목표 (냉·온수기 사용업소)	실 적	진 도 (%)	비고
숙박업	262	18	5	27%	숙박업소 자율점검 시 냉·온수기 사용 업소 파악
목욕장업	56	56	12	21%	2개소 부적합으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 향후 추진계획

○ 숙박업·목욕장업 먹는물 검사(10월 목욕장 욕조수 채수시 병행 실시)

□ 기대효과

○ 먹는 물 직접 수거검사를 통한 위생수준 향상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율(%)
640천원	_	_